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6. 12. .
제출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‘주민생활지원과’신설에 따른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‘복지환경국’을 ‘주민생활지원국’으로 명칭변경(안 제3조)
- ‘주민생활지원과’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조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행정자치부('06.4.5)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계획
- 행정자치부('06.9.19)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복지환경국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)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, 허가민원과, 환경보호과 및 생활위생과를 둔다.

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사항
2. 사회복지시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사항
3. 지역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업무에 관한사항
5. 노인, 여성, 아동보육,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
6.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및 허가민원에 관한 사항
7.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8.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
9.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구미시의회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중 “허가민원과, 사회복지과”를 “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, 허가민원과”로 한다.

②구미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③구미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④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“경제진흥국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⑤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복지환경국장, 경제진흥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, 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한다.

⑥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3조(실·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하여 기획정보실, 행정지원국, <u>복지환경국</u> , 경제통상국, 건설도시국을 둔다.	제3조(실·국의 설치) ----- -----, 주민생활지원국,----- -----.	국 명칭 변경
제7조(복지환경국에 두는과)①복지환경국에 <u>사회복지과</u> , <u>허가민원과</u> , <u>환경보호과</u> 및 <u>생활위생과</u> 를 둔다.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허가민원실의 종합관리 운영 2. 민원제도개선 3. 생활보장 4. 장애인복지, 사회복지 5.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 6. 유아교육 및 보육관리 7. 여성의 교양지도 및 지위향상 8.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운영지원 9. 10.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1. 공중,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 12. 청소행정의 종합대책 수립 시행	제7조(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)①주민생활지원국에 <u>주민생활지원과</u> , <u>사회복지과</u> , <u>허가민원과</u> , <u>환경보호과</u> 및 <u>생활위생과</u> 를 둔다.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사항 2. 사회복지시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. 3. 지역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.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5. 노인, 여성, 아동보육,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 6.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및 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7.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.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9.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	주민생활지원과 신설